승 객 준 수 사 항

- 1)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제6조에 따른 포획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자원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니다.
- 3)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4)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-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-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. 취사. 0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5)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의 대피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)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
- 7)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
- 8)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.



신안군